

「게임제공업소에서 제외하는 영업소의 범위 등」 고시 운영지침

문화관광부 게임음반과 제공

게임제공업소에서 제외하는 영업소, 즉 싱글로케이션에 대한 범위 및 운영지침이 고시가 되었다. 이 지침에 따르면 일반영업소당 2대의 게임물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, 인형뽑기 등 크레인 게임물은 경품게임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라 그 합법적인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. 이에 따라 게임물의 일반영업소 설치가 앞으로 크게 촉발이 될 것으로 보여져 자판기 산업계도 게임물과의 공생관계를 새롭게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. 금호 산업정보에서는 일반영업소의 범위 및 운영지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알아보기로 하자.

목 적

-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별표 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는 영업소(일반영업소)의 범위 등」에 관한 고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함

일반영업소의 게임물 제공 영업 범위

1. 게임물의 종류

-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“전체이용가”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만 설치 가능함. 다만, 베틱기능 또는 경품제공기능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함.
- 인형뽑기 등의 크레인게임물은 경품제공기능이 있는 게임물로 보지 아니함. 다만, 크레인게임물에서 배출되는 물품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에서 등급분류시에 정한 물품의 종류로 제한하며, 물품의 가격은 1만원 이내로 함.

2. 게임물의 설치 수량

- 1개의 영업소당 2대의 게임물을 설치할 수 있음
- 2인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은 이를 1대로 보며, 3인 이상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게임물은 이를 그 이용자의 수와 동일한 대수의 게임물로 봄

3. “영업을 영위하는 영업장소”(게임물의 설치장소)의 범위

- 게임물을 설치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당해 영업소의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설의 내부에 한함.
- 다만, 다음과 같이 「별도의 공간으로 명확히 구획된 장소」의 경우 게임물을 설치할 수 있음.
 - 주된 영업시설에 부속하는 장소에서 게임제공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(예 : 문방구 등)
 - 영업행위가 전적으로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(예: 실외 스포츠장 등) 당해 영업소의 이용 고객에 한하여 게임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구획된 장소, 다만, 노점 등 판매업 및 통신판매업 등 무점포 도 · 소매업소는 제외함.
 - 울타리 등 경계물이 설치된 장소에서 영업행위가 실내외부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(예 : 음식점) 당해 영업소의 이용고객에 한하여 게임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구획된 장소.

- 백화점 등 종합 도 · 소매점 내부에 다수의 영업장이 포함된 경우에는 각 영업장을 별개의 영업소로 봄.

4. 게임물의 제공방법 등 기타사항

- 게임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받은 대로 제공하여야 하며, 게임물을 개 · 변조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됨.
-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주가 임의대로 문구류 등 경

품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들이 게임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
- 게임물은 당해 영업소의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시간에만 제공될 수 있으며, 영업소의 영업행위가 종료되면 당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전원을 끄거나, 잠금장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.

※ 등 지침내용은 홈페이지 『문화관광법령→고시』에서 고시내용과 함께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■ 담당부서 : 게임음반과 (3704-9640~3)

■ 담당자 : 윤석모

문화관광부 고시 제2002-12호

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(법률 제 6473호) 제2조 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·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는 영업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02년 10월 12일

문화관광부 장관

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는 영업소의 범위 등

1. 목적

동 제도의 법적 취지를 고려,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는 영업소(이하 "일반영업소" 한다)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함으로써 게임물 설치에 적정을 기하고, 동 게임물 이용자들에게 건전한 게임물을 제공토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보호와 게임산업의 발전 및 건전한 게임문화정착을 도모하고자 함.

2. '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는 영업소' (일반영업소)의 개념 및 범위

가. 개념

○ '일반영업소'라 함은 게임물과 관계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의 영업을 영위하는 영업장소를 말함.

- 다만, 노점, 유사 이동판매업 및 통신판매업 등

무점포도·소매업소는 제외함.

○ 백화점 등 종합도·소매점 내부에 다수의 사업장이 포함된 경우에는 각 영업장을 별개의 일반영업소로 봄.

나. '영업을 영위하는 영업장소'의 범위

○ '영업장소'라 함은 당해 영업소의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설의 내부를 원칙으로 하되

○ 영업소의 영업행위가 실외 또는 실내·외부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영업소의 이용객에게 한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영업시설에 부속하는 별도의 공간으로 명확히 구획된 장소를 말함.

○ 당해 영업소가 사전에 설정한 '영업시간의 종료 후' 또는 '영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중' 게임물을 이용토록 하는 경우에는 일반영업소가 아닌 곳에서 게임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봄.

3. 시행시기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